

조세브리핑_Tax Briefing

제3호

배포일시	2023. 8. 29.(화)	생산부서 (담당자)	조세연구팀 팀 장 최지훈 / 02-6011-8558 담당 황영현 / 02-6011-8559
------	-----------------	---------------	--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회는 회원과 회원의 고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뉴스와 정보들을 정리하여 조세브리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3 세법개정안 정부안 최종 확정

지난 조세브리핑(7. 31.)으로 안내한 7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오늘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일부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1.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법률(안)	입법예고	수정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호	국선대리인 : 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	국선대리인 : 영세법인 신청 가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기한 : 단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기한 : 현행 유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우리회가 전회원 의견 수렴(7. 27. ~ 8. 4.)하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지난 8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2. 우리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요약 내용 참고)

2 '24 국세수입 예산안 367.4조원으로 편성

또한,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367.4조원으로 편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참고)

(단위 : 억원, %)

	'22년 실적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23년 예산 대비	
				증감액	%
총 국 세	3,959,393	4,004,570	3,673,750	△330,820	△8.3
[일반회계]	3,851,596	3,902,539	3,561,792	△340,747	△8.7
◇ 내 국 세	3,522,750	3,579,676	3,216,746	△362,930	△10.1
○ 소 득 세	1,287,486	1,318,632	1,258,250	△60,382	△4.6
■ 종합소득세	239,389	247,255	230,682	△16,573	△6.7
■ 양도소득세	322,333	297,197	224,165	△73,032	△24.6
■ 근로소득세	574,418	606,216	620,842	14,626	2.4
○ 범 인 세	1,035,704	1,049,969	776,649	△273,320	△26.0
○ 상속증여세	145,940	171,274	146,531	△24,743	△14.4
○ 부가가치세	816,266	832,035	814,068	△17,967	△2.2
◇ 종합부동산세	67,988	57,133	41,098	△16,035	△28.1
[특별회계]	107,797	102,031	111,958	9,927	9.7

- 붙임 : 1.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 우리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요약 내용
 3.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1.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29.(화) 11:00 배포 2023. 8. 29.(화) 09:00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7.27.(목)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지난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8.~8.7.) 및 입법예고(7.28.~8.11.)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영세 법인도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5개 법률안은 9.1(금)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재면 (044-215-4110)
		담당자	서기관	김현수 (soo9439@korea.kr)



(붙임 2)

우리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내용 (요약 자료)

연번	제 목	현 행	입법예고	건의사항
1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추가 (국기법 §47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제외 - 상속재산(증여재산)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제외 확대 - <추가> 부담부증여의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추가 - 기업상속공제와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도 재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사업용 자산 비율이 달라져 과세 되는 경우 추가
2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사유 삭제 (소득법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 (적용예외) 이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 (적용예외)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 적용예외 추가 사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삭제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대한 개선 건의 (소득법 §164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 2024년부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 - 다만, 상용근로소득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개선 (조특법 §96의3, 조특령 §96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일몰기한) 2023.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기한 1년 연장 - (일몰기한) 2024.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개선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목적의 특례제도로서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대상 으로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폐업과 개업이 빈번히 일어나기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직전 과세연도 보다 임대료를 인하해준 자로 개정 건의
5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 확대 (법인법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 - (조특법§8의4) 직전 2개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 확대 - 특례제도가 아닌 기존 직전 과세연도만을 대상으로 한 소급공제제도를 직전 2개 과세연도로 확대
6	국제거래 채권 지연 회수 또는 채무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 채권지연회수 또는 채무지연지급 이자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 채권지연회수 또는 채무지연지급 이자

연번	제 목	현 행	입법예고	건의사항
	지급 이자 계산 (국조령 §11)	-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자상당액 계산		계산 시 통상적인 회수 기간 설정 - <신설> 통상적인 회수 기간은 거주자 또는 국외 특수관계인이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고 채권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평균 회수기간에 10일 더한 기간
7	조세특례제도의 감면대상 업종의 열거방식 개선 (조특법 §6, §7, §30)	<input type="checkbox"/> 열거방식의 감면대상 업종 특례제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조특법§7)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	-	<input type="checkbox"/> 열거방식의 감면대상 업종 특례제도 개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업종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개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 업종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중기법상 중소기업으로 개정
8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136)	<input type="checkbox"/>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일반접대비 한도액과 문화 접대비 한도액을 합한 금액	<input type="checkbox"/>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신설>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10% 추가(적용기한) 2025. 12. 31.	<input type="checkbox"/>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중기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 추가
9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구체화 (소득법 §88)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추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각 세대별로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설치되어야 하는 요건은 다중주택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여 구조 요건 삭제
10	증여재산 공제 한도 상향 (상증법 §53)	<input type="checkbox"/> 증여재산공제 한도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	<input type="checkbox"/>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향 - 혼인 공제 신설에 따른 혼인 이외의 자에게도 혜택이 필요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억원(미성년자의 경우 5천만원)으로 한도 상향

연번	제 목	현 행	입법예고	건의사항
11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특법 §30의6)	<input type="checkbox"/>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 (기본공제) 10억원 - (세율) 10% 단, 60억원 초과분 20%	<input type="checkbox"/>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 (기본공제) 10억원 - (세율) 10% 단, 300억원 초과분 20%	<input type="checkbox"/>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 저율 과세 구간 확대에 따른 수혜기업은 규모가 큰 기업이고,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가 건의
12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적용 시 단서 신설(안) 입법 보류 (조특법§133)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한도 합리화 - <단서 신설> 요건 모두충족 ❶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❷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한도 단서 신설 입법 보류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인위적인 분산양도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두는 것은 과도한 입법	
13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무 대리인 생년월일 작성란 삭제 (부가적 [별지 제21호 서식] 등)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개별 소비세 신고서 등 -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 기재	-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개별 소비세 신고서 등 -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므로 세무대리인의 생년 월일기재를 삭제하고, 등록 번호 기재로 대안 제시
14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에 따른 제재 규정 완화 (조특법 §106의11)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환급특례 신설 - <신설> 개인택시 운수 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input type="checkbox"/> 환급특례 신설 규정의 제재규정 완화 -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 양도 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을 추징당한 경우 5년간 환급 금지 규정 삭제



보도시점 2023. 8. 29.(화) 11:00 배포 2023. 8. 28.(월) 14:00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 367.4조원으로 2024년 국세수입 예산 편성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2023년 예산 400.5조원 대비 △33.1조원 감소한 367.4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356.2조원(2023년 예산 390.3조원 대비 △34.1조원 감소), 특별회계를 11.2조원(2023년 예산 10.2조원 대비 1.0조원 증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의 주요 세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는 2023년 예산 대비 △6.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세는 2023년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2023년 예산 대비 △27.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예산 기준으로는 △1.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에 대해서는 현재 재추계 작업 중이며, 결과는 9월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사무관	최진규 (044-215-4120) 남원우 (namwonwoo@korea.kr)
-------	--------------	------------	-----------	--

참 고

2024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 억원, %)

	'22년 실적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23년 예산 대비	
				증감액	%
총 국 세	3,959,393	4,004,570	3,673,750	△330,820	△8.3
[일반회계]	3,851,596	3,902,539	3,561,792	△340,747	△8.7
◇ 내 국 세	3,522,750	3,579,676	3,216,746	△362,930	△10.1
○ 소 득 세	1,287,486	1,318,632	1,258,250	△60,382	△4.6
■ 종 합 소 득 세	239,389	247,255	230,682	△16,573	△6.7
■ 양 도 소 득 세	322,333	297,197	224,165	△73,032	△24.6
■ 근 로 소 득 세	574,418	606,216	620,842	14,626	2.4
○ 범 인 세	1,035,704	1,049,969	776,649	△273,320	△26.0
○ 상 속 증 여 세	145,940	171,274	146,531	△24,743	△14.4
○ 부 가 가 치 세	816,266	832,035	814,068	△17,967	△2.2
○ 개 별 소 비 세	93,182	101,943	101,945	2	0.0
○ 증 권 거 래 세	63,029	49,739	53,829	4,090	8.2
○ 인 지 세	7,988	8,158	8,505	347	4.3
○ 과 년 도 수 입	73,155	47,926	56,969	9,043	18.9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164	111,471	153,258	41,787	37.5
◇ 관 세	103,241	107,237	89,065	△18,172	△16.9
◇ 교 육 세	46,444	47,022	61,625	14,603	31.1
◇ 종합부동산세	67,988	57,133	41,098	△16,035	△28.1
[특별회계]	107,797	102,031	111,958	9,927	9.7
◇ 주 세	37,665	32,151	35,759	3,608	11.2
◇ 농어촌특별세	70,132	69,880	76,199	6,319	9.0